

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1. . .
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장이 공동위원장인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사무국 운영규정에 대하여 구미시의 승인을 다시 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효율성이 저하됨.
-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정기회의 수를 늘려 위원들의 심도 있고 다양한 협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13조4항 “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”를 삭제한다.
- 제14조제1항제1호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“연 4회 이상”으로 수정한다.
- 제14조제1항제2호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“연 6회 이상”으로 수정한다.

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결정하고,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”를 “결정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2회”를 “4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4회”를 “6회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사무국) ① ~ ③ (생략) ④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대표협 의체에서 결정하고, 구미시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	제13조(사무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결정한 다.
제14조(회의) ① 각 협의체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.	제14조(회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대표협의체 : 연 2회 이상	1. ----- 4회 - --
2. 실무협의체 : 연 4회 이상	2. ----- 6회 - 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